

투자권유준칙

제 정: 2009. 2. 4

개 정: 2009. 2. 25

2011. 1. 3 (전문개정)

2012. 4. 23

2012. 8. 6

2013. 10. 16

2014. 3. 31

2014. 6. 1

2014. 10. 17

2015. 2. 9

2015. 8. 24

2016. 4. 1

2017. 1. 1

2017. 9. 6

2019. 2. 1

2019. 7. 1

2019. 10. 7

2021. 3. 25

2021. 12. 1

2021. 12. 30

2022. 3. 25

2022. 7. 6

2022. 11. 4

2023. 4. 14

2023. 4. 26

2023. 8. 25

2024. 3. 1

투자권유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 조 제 1 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감독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금융소비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법 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5.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6.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한다.
7.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 3 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및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별지 6] 금융상품 상담확인서를 활용하여 고객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자 정보 확인

제 4 조(방문 목적 확인) ①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임직원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5 항 단서 및 법 제 2 조 제 9 호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 3 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별지 1](신용공여의 경우 [별지 7])에 따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고 그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1]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그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그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4 장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 대한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⑤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2]“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그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 7 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그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 1 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 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연 1 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 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 4 장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8 조(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불원하여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3]에 따라 확인을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와 유의사항(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시 확인서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 조 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그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임직원등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 9 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단, 대출성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별지 7]에 따라 파악한다.

②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6 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별지 4](신용공여의 경우 [별지 8])에 따라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1 조 내지 제 13 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제 2 항의 경우에 임직원은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제 10 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①회사는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환매·매매의 용이성, 환율의 변동성,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별표 4]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②위험등급은 최소 6 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 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표 4]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③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 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조직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투자권유 적합성

제 11 조(투자권유 절차) ①임직원등은 [별표 2]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 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4]에 따라 확인을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와 유의사항(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시 확인서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임직원등은 법 제 17 조 제 2 항 또는 제 18 조 제 1 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투자성상품에 한함)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ELS, ELF, ELT, DLS, DLF, DLT 상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5]”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임직원등은 만 65 세 이상의 투자자(이하 “고령투자자”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별표 2]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제 9 장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직원등은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투자성상품에 한함)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 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 1 항의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가목,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3. 투자권유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온라인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
- ②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 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제 14 조의 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장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거래시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사후 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다.
- ②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확인서 징구 건 수, 확인서 징구 건 중 민원발생 건 수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설명의무 준수

- 제 15 조(설명 의무)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 수준, 설명 내용 등

③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 19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임직원등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3 조 제 1 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6 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및 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및 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③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및 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7 조(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제 8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8 조(계약서류의 교부) ①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 19 조(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의 철회) ①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 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법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의 방법을 말한다. 제 19 조 내지 제 21 조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계약 체결일

②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 20 조 내지 제 21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⑤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 20 조(신용공여 등의 경우 청약의 철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2 조 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 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37 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계약 체결일

②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 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 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③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 하여 지급한다.

④제 19 조 제 5 항 내지 제 6 항의 내용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 21 조(위법계약의 해지) ①회사는 법 제 17 조(적합성원칙) 제 3 항, 제 18 조(적정성원칙) 제 2 항, 제 19 조(설명의무) 제 1 항·제 3 항, 제 20 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 1 항 또는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회사는 투자자가 제 1 항의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 : 최초로 수수료를 납부한 날. 다만,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 한다.

2. 대출성 상품 : 회사가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를 최초로 지급한 날

③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 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법 위반 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회사는 제 2 항 내지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2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3 조 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23 조(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시 금지행위)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부당한 권유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5.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 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 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또는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9.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거래, 과당매매,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제 24 조(투자자문·투자일임 계약 투자자에 대한 특칙)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 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 23 조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25 조(투자자문·투자일임 계약시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호 및 제 2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26 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제 1 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에 따라 유형화된 투자자성향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투자일임재산 운용부서(신탁재산 운용부서를 포함한다)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 1 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제 1 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 26 조의 2(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①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3(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권유 특칙) ①회사는 임직원등이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 4 장의 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공동 GP 와의 계약서에 법 제 4 장의 판매규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투자권유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7 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등) ①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사항 포함)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 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9 장 고령투자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 28 조(고령투자자 전담조직) ①회사는 고령투자자 및 고령투자자 중 만 80 세 이상의 투자자(이하 “초고령투자자”라 한다)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마련,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③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업점 및 콜센터에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제 29 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①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1.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2. 조건부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투기등급 채무증권, 해외장내파생상품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②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Compliance 담당자에게 권유의 적합성을 사전 확인받아야 하며, Compliance 담당자 또는 영업점장(부재시 차석자) 등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투자권유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에 따라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서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전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부서를 통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및 판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하여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⑥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족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0 조(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희망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 조(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회사의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및 투자권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미승인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③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 32 조(취약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임직원은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유의사항을 판매하는 경우 제 29 조를 준용하여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투자자정보 확인서

팀 원	팀 장	지점장

※'투자권유 희망하지 않음'만 지점장 결재

기본정보	계좌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	------	--	-----	--	------	--

처리유형	☐ 내점(본인)	☐ 내점(대리인)	☐ 유선(본인만 가능)
------	---------------------------------	----------------------------------	-------------------------------------

안내 및 유의사항	■ 이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자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 희망 여부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 금융상품의 주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

신규/갱신 여부	☐ 신규 또는 갱신(정보 변경)	☐ 갱신(기존정보와 동일) ※ 유효기간이 만료된 고객은 '기존정보와 동일' 선택 불가
---------------------	--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1.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님이 일임, (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등을
------------------------	--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흐린 글씨 항목은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를 희망함(정보 제공함)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정보 제공함)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정보 제공하지 않음)

강화된 설명 여부	☐ 강화된 설명 원함(고령투자자, 주부, 은퇴자, 문맹자 등 강화된 설명을 듣기 원하는 고객) * 강화된 설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 경우 강화된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됩니다.
--------------	---

방문·전화권유 요청 여부 확인	☒ 아래 금융상품은 고객의 권유 요청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반투자자: 고난도금융투자상품(ELS 등),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투자신탁, 일반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 상기 금융상품에 대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권유 요청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흐린 글씨 항목은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전화를 통한 투자권유를 요청함 - 투자권유 요청 경로(복수 가능): 방문 / 전화 - 투자권유 요청 상품(복수 가능): ELS / DLS / 사모펀드 ☐ 방문·전화를 통한 투자권유를 요청하지 않음

투자자성향 분석정보

항 목	내 용	배 점
투자경험기간	1.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3년 이상 ☐ 2~3년 이내 ☐ 1 ~2년 이내 ☐ 6개월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전혀 없음	5
투자경험 (투자경험 상품)	2. 기존에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해외주식, 해외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 주식, 주식형 펀드, ELS/DLS ☐ 회사채, 혼합형 펀드 ☐ 특수채, 금융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B/DLB, 외화RP	5

	☐ 국·공채, MMF, CMA, RP ☐ 투자경험 없음	
투자경험 (파생결합상품 투자경험)	2-1.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또는 ELF 투자경험이 있습니까? ☐ 투자경험 있음 ☐ 투자경험 없음	-
투자지식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님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전혀 없음	5
소득현황	4.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수준입니까? ☐ 1억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1,2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1,200만원 미만 ☐ 소득 없음	5
재산상태	5. 고객님의 향후 재산상태에 대한 예상은 어떠합니까? ☐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수입은 있으나 불안정함 ☐ 연금 외 소득없음	5
금융자산대비 투자자금비중	6.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예·적금 제외)의 비중은? ☐ 30% 이상 ☐ 20 ~ 30% 미만 ☐ 10 ~ 20% 미만 ☐ 5 ~ 10% 미만 ☐ 5% 미만	5
투자목적	7.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고수익 추구 ☐ 시장(주가지수) 평균을 넘어선 수익을 추구 ☐ 시장(주가지수) 수준의 수익을 추구 ☐ 채권 이자, 주식 배당 수준을 추구 ☐ 예적금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안정적 투자	5
위험감수	8. 고객님의 감수할 수 있는 손실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감수할 수 있음 ☐ 일부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음 ☐ 최소한의 손실만 감수 ☐ 무조건 원금 보전	5
투자 예정기간	9. 고객님의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3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6개월 이상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5

랩/신탁상품 투자자성향 추가 분석 정보

총자산대비 금융자산비중	10. 고객님의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은 전체 자산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합니까? ☐ 5% 이내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위험감수 2	11. 계약기간의 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1~2개월 동안) 감내할 수 있 는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 고객님의 선택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 ☐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 ☐ 관망 ☐ 신규 투자자금 추가 불입	

분석결과	일반투자성향 :	랩 투자성향 :
------	----------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본인의 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제공한 정보는 작성일 현재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정보제공일로부터 2 년간 본인의 투자성향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습니다.
3. 본인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서명)

[별지 2]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 ☐ 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장외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	☐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	--------------------------------	--------------------------------

1. 투자자의 재무 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_____

외화자산 총계 : _____

부채 총계 : _____

외화부채 총계 : _____

연간 수출총액 : _____

연간 수입총액 :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2. 거래의 목적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예 ☐ 아니오

3.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 ☐ 통화 ☐ 이자율 ☐ 일반상품 ☐ 신용위험 ☐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직급 :	성명 :
관련경력:	관련자격:	
2) 장외파생상품 거래 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
관련경력:	관련자격: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보유 정도 ☐ 상 ☐ 중 ☐ 하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등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적합합니까? ☐ 예 ☐ 아니오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으로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인감(서명감)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5.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6. 장외파생상품 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파생상품 종류	경험 유무	건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				
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본인의 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제공한 정보는 작성일 현재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정보제공일로부터 2 년간 본인의 투자성향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습니다.
3. 본인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직위) _____ (담당자) _____ (서명/인)

(법인명) _____

대신증권 주식회사 확인

본 확인서는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 입니다.

년 월 일

(영업점/부서명) _____ (직위) _____

(담당자) _____ (서명/인)

[별지 3]

투자권유 미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 이 확인서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 이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 |
|---|
| <p>1.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p> <p>*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p> <p>2.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p> <p>*설명 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p> |
|---|

- ※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 희망시 체크 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별지 4]

부적합(부적정) 거래 확인서 및 적정성 판단 보고서

기본정보	고객명		계좌번호	
	투자상품명			

부적합(부적정)거래확인서

- * 이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 이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3.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4.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고객자필기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투자자성향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상품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직원의 투자권유가 불가하며,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 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

- 이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고객께서 투자하는 상품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님에게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제공합니다.
-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ELS, DLS, 장외파생상품 등을 20% 이상 포함된 펀드 등)을 포함하여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파생상품, 적정성 대상 상품이 포함된 랩·신탁 등
- 고객의 투자자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투 자 성 향	☐ 적정 ☐ 부적정	
	투 자 목 적	☐ 적정 ☐ 부적정	
	위험감수능력	☐ 적정 ☐ 부적정	
	투 자 경 험	☐ 적정 ☐ 부적정	
	설 명 이 해 능력	☐ 적정 ☐ 부적정	
종합판단결과		☐ 적정 ☐ 부적정 *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부적정항목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 종합판단결과는 부적정으로 분류	
상담직원확인	영업점	직급	성명
			(인)

[별지 5]

적합성 보고서

고객유형	☐ 신규투자자 ☐ 고령투자자	고객명		계좌번호	
------	---	-----	--	------	--

*신규투자자: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 *고령투자자: 만 65 세 이상

1.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성향	투자성향 주요 특징
☐ 적극투자형	*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높은 수익을 추구 *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ELS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위험 상품 거래 경험이 있음 * 고수익 추구, 수익을 위해서라면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음

2. 권유 상품 정보

상품명	투자위험도

3. 투자권유 사유 및 투자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 위 상품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기초자산: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각 국을 대표하는 주요 지수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개별주식에 비하여 변동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또한, 고객님의 현재투자 자금 성향 및 투자가능기한에도 부합하여 위 상품을 권유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 상품구조 및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손실발생이 가능하며, 투자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손실발생조건 : ● 이 상품은 거래소에서 유통되지 않아 환금성이 낮으며,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증권 권의 공정가액기준 95% 이상을 지급하며, 이 경우 원금의 상당액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작성자 :	(인)	고객확인 :	(인)
------	-------	-----	--------	-----

[별지 6]

금융상품 상담확인서

투자자 정보	고객명		계좌번호		투자자성향	
	고객확인	투자자정보 확인 시 직원이 정보조작을 유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직원으로부터 고객의 투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				
투자상품 정보	상담유형	☐ 내점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상품종류	☐ 공모펀드 ☐ 사모펀드 ☐ ELS/DLS(ELB/DLB) ☐ 채권 ☐ 전자단기사채 ☐ CP ☐ 해외채권 ☐ 신탁 ☐ 랩어카운트 ☐ 기타()				
	상품명		위험등급			
	최대손실 가능금액	☐ 원금전액 <input 3"="" type="checkbox/>()</td> <td>고난도상품</td> <td colspan="/> ☐ 대상 ☐ 대상 아님				
	청약철회	☐ 대상아님 ☐ 가능(가입일~7일 내 당사에 철회신청서 제출 시 청약 철회)				
	고객확인	투자하시는 상품은 직원이 추천할 상품입니까? (택1) ☐ 직원 추천 상품 ☐ 직원 추천상품 아님(고객이 지정한 상품)				
적합성 여부/ 적정성 판단 보고서 대상 여부	구분	☐ 적합 ☐ 부적합 ☐ 적정성 판단 보고서 교부 대상 ☐ 교부 대상 아님 * 부적합 투자자 중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				
투자숙려제도	구분	☐ 대상 *사유: ☐ 고난도상품 : 개인 일반투자자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 고령투자자 / 개인부적합 투자자 * 숙려기간은 청약/주문일부터 2영업일 적용되며, 숙려기간 중 신규 청약/주문은 불가합니다. * 숙려해피콜을 통해 상품의 위험, 원금 손실가능성, 최대 손실 가능금액, 취소 가능 기한 및 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고객님의께서는 충분히 숙고 후 투자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숙려기간 동안 투자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약/매수/계약이 취소됩니다. ☐ 대상 아님				
고령투자자 여부	구분	☐ 비고령자 ☐ 고령자 ☐ 초고령자 * 고령자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시 관련 내용 안내				

[투자권유준칙(07130-C)]

상담직원 상담직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만 추천, 상품 설명자료를 교부하고(수령거부시 제외)
 설명확인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그와 동일하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상품구조, 계약기간,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위험 등 상품 주요 내용
-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자기책임원칙(투자결과의 고객 귀속)
- 투자 결과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고객에 귀속된다는 내용
- 수수료 및 보수 등 비용에 관한 내용, 조기상환, 환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핵심설명서

- 유사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한정) 방문 또는 전화연락에 대한 금지요구권과 행사방법 및 절차

상담 직원 확인	영업점	직급	성명
			(인)
고객 확인	투자상품에 대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		

상담일:	년 월 일	상담(내점)고객명 :	(인/서명)
------	-------	-------------	--------

* 대리인 내점 시 대리인 서명도 가능

직원기재란	유선통화시각	팀원통화시각	팀원	팀장통화시각	업무팀장
	기타		(인)		(인)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안내

금융상품 상담과정 녹취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직원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시 상담과정을 녹취합니다. 녹취된 자료는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고객이 요청하시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해피콜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해피콜을 실시합니다. 고객님의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판매(방문/전화권유)의 경우 방문판매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방문판매 해피콜을 추가 실시합니다.
불완전판매 신고	상품 가입시 상담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높이기 위하여 답변을 유도하거나, 「상담직원 설명 확인」 항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완전판매를 신고하시면 확인 후 가입철회 등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실시합니다. - 신고방법: 대신증권 홈페이지 하단 '불완전판매 신고' 메뉴 작성
청약의 철회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을 매수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도 예약한 금전 등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단위형, 모집형 펀드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계약 - 신청가능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 숙려기간 2 일 포함 시 9 일 이내 -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함 - 청약철회 기간 내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발송했을 때 철회 효과가 발생함 단, 고객이 예약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법계약 해지	판매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해지를 요구하면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입니다. *판매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5 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위반의 경우 - 해지 가능 기간 :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 년.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 통지 기간 : 해지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회신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보
자료 열람 요구권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 영업점 내점 (타점 신청 가능) 신청 - 신청일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
민원(분쟁) 처리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감동센터(1588-4488) 및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당사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14 영업일 내(조사기간 제외)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E-mail 등으로 결과를 회신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 분쟁 시 관할법원 안내	방문판매 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휴면금융재산등 발생예방 안내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상품 만기 사실을 잊고 방치할 경우 예·적금 이자 상당의 기회이익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만기 시 자금 운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7]

[신용공여] 고객정보 확인서

-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일반금융소비자)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대출용도	(신용거래의 경우) ☐ 주식 매수 ☐ 주식 대주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 금융투자상품 매수 ☐ 가계자금 ☐ 법인자금 ☐ 기 타
연 령	☐ 19 세 미만 ☐ 19 세~59 세 ☐ 60~64 세 ☐ 65 세~69 세 ☐ 70 세~79 세 ☐ 80 세이상
소득 현황	(개인) ☐ 1 억원 이상 ☐ 5,000 만원 ~ 1 억원 미만 ☐ 3,600 만원 ~ 5,000 만원 미만 ☐ 1,200 만원 ~ 3,600 만원 미만 ☐ 1,200 만원 미만 (법인) ☐ 1,500 억 이상 ☐ 120 억 ~ 1,500 억 미만 ☐ 10 억 ~ 120 억 미만 ☐ 5 억 ~ 10 억 미만 ☐ 5 억 미만
보유자산 현황	만원
부채 현황	만원
신용점수	신용점수는 [신용공여] 투자자정보 입력 완료시 확인하며, 신용점수 515 점 이하인 경우 약정이 불가합니다.
변제 계획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매도상환 ☐ 기타소득()
신용공여 이해도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며, 신용공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나, 신용공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은 없으나, 주식투자 경험이 ()년 이상으로 신용공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적정성 판단 보고서 수취 여부
☐ 희 망 ☐ 불필요

일자 : 고객의 성명 : (인)

[별지 8]

[신용공여] 적정성 판단 보고서

고객명 :	계좌번호 :
-------	--------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대출 용도 :	
연 령 :	
보유자산 등 :	
신용 점수 :	
변제 계획 :	
신용공여 이해도 :	
기 타	

■ 적정성 판단 결과

종 합	☐ 적정 ☐ 부적정
-----	--

■ 기타 회사 확인 사항

유사한 고객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이 보고서 내용은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하기에 앞서 신용공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지점/부서명 _____(담당자) _____(인)

[별표 1]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채무 증권 (장기)	원화 표시	B+이하, 무등급	BB+ ~ BB-	BBB+ ~ BBB-	A+ ~ A-	특수채,금융채 AAA ~ AA-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외화 표시	BBB+이하		A+ ~ A-	AAA ~ AA-		
채무증권(단기)			B 이하, 무등급	A3	A2	A1	
파생 결합 증권 등	ELS,DLS ELB,DLB	외화표시 ELS/DLS	원금비보장형 ELS/DLS	원금부분보장형 (손실 20%이내)	원금부분보장형 (손실 10%이내) 외화표시 ELB/DLB	ELB,DLB	
	ELW	ELW					
	ETN	인버스/ 레버리지 ETN	ETN				
조건부자본증권			전환형,상각형				
지분증권		해외주식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K-OTC KONEX 신용약정	주식				
집합투자증권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CMA,예치금 등						CD	CMA,MMW RP,시중은행 예금,콜론 등
선물옵션		선물,옵션					

- 참고) 1. 위 분류기준은 관계법령등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은 가장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에 따른다.
2. 복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은 구성 자산들의 위험등급들 중 가장 높은 것을 따른다.

[별표 2]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표 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1 년미만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1 년 이상 3 년 미만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3 년이상
개인	만 65 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 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비상장 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별표 4]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제 2 조(적용대상 금융상품)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상품은 제외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제 3 조(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① 회사는 제 2 조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② 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제 4 조(위험등급 체계) 위험등급은 최소 6 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 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 5 조(위험등급 산정방식) 회사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환매·매매의 용이성, 환율의 변동성,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제 3 장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시장위험(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한다. 이하 같다)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 3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 단계로 산정한다.
2. 신용위험(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한다. 이하 같다) 등급은 자본시장법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35 호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 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 등급(저위험)	5 등급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주 1)} , AAA~AA-		A+~A-	BBB+~BBB-	BB+~BB-	B+이하,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무등급	

주 1) 자본시장법 제 118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주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3.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제 3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4.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 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 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은 설명서(금소법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6. 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서 정한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8. 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제 3 장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위험등급 산정 시기)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 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 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 7 조(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 8 조(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①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②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제 9 조(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 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표 2]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2]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구 분	해당 금융투자상품
주 의	금리스왑, 옵션매수(원금 초과 손실 가능하나, 손실 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경 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 험	주의, 경고에 해당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제 10 조(공모펀드) ①설정 3 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 3]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3] 설정 3 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 등급(매우높은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 ^{주1)} 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다소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 ^{주2)}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 ^{주3)}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매우낮은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2)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3)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②설정 3 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 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 4]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4]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주)} 사용)

구분	1 등급(고위험)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주)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③레버리지·인버스 ETF 는 VaR 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 등급 상향한다.

④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등)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⑥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제 2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조(사모펀드) ①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②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 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파생결합증권) ① 파생결합증권의 종합등급은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 5]에 따라 산정한다.

[표 5]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분	MR1(고위험)	MR2	MR3	MR4	MR5	MR6(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주) MR 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 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② 파생결합증권의 시장위험은 [표 6]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 등급을 부여하고,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 등급*을 부여 *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95% 이상 5 등급, 90% 이상 95% 미만 4 등급, 80% 이상 90% 미만 3 등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 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 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 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예: 25%)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베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 배를 초과하는 경우

③상장지수증권(ETN)은 1~2 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레버리지·인버스·해외지수·해외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1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④파생결합증권의 신용위험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⑤파생결합증권의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제 2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주식워런트증권(ELW)은 1 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 12 조(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2 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1. 비상장주식
2. 해외거래소 상장종목
3.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

제 13 조(채무증권) 채무증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1. 회사채(자본시장법 제 4 조제 3 항 및 제 7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을 포함한다)는 [표 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2.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제 2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 등급 상향 가능)하고,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3.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1.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2.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3.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67] 제 3-1 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 조(투자일임계약) ①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3 호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 16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3.1.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024.3.1. 이후 제 6 조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